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• 의결

안건번호 제2023-004-033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3. 3. 8.

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 - 가. 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2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사업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

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()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1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피심인은 신고인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선 및 이메일()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(녹취파일 제공)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.

피심인은 신고인의 최초 열람 요구에 대해 내부 절차를 근거로 형식적인 요건 (신청서 자필 작성)¹⁾이 충족되지 않아 '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서'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열람을 거절()한 사실이 있다.

¹⁾ 통상의 자필 서명 요구를 넘어 신청서 본문 내용 전체를 워드프로세서 등이 아닌 직접 글씨로 쓰는 경우(手記)에 만 열람 신청 가능

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의 의사가 있었으나 열람 방법의 차이로 지연된 부분은 인정하며, 신고자 에게 열람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,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

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은 신고인이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열람을 거절하였으나, 전화로 수집하는 녹취파일의 열람을 위해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은 수집 방법보다 열람 요구 방법을 어렵게 한 것으로,

통상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신청서의 작성방식(자필작성인지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)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, 신고인의 열람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바,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(열람 거절)에 해당한다.

Ⅳ. 처분 및 결정

1. 시정조치 명령

- 가. 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	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위반행위 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터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10호	600	1,200	2,400

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.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1. 일반기준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, 조사과정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 협조한 점,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,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1. 일반기준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금액 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
제 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제 3항	제75조제2항제10호	600	_	300	300

[※]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제3항·제5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10호,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제1항에 따라 과태료,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3년 3월 8일

위 원 장	고 학 수	(서 명)
-------	-------	-------